

극지연구센터 규정

시행: 2020.05.28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.) 연구처 부설 극지연구센터(영문명 The Polar Research Center, PRC. 이하 ‘본 센터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북극 및 북극항로에 관한 학술연구, 정책 개발, 국제협력, 산업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 및 R&D 수행: 북극 및 북극항로 관련 학술연구 및 응용연구 수행,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(R&D) 프로젝트 수행 및 산학연 협력연구 추진,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수행.
2. 교육 및 인재양성: 극지 관련 강좌 신설, 극지대학원 신설, 최고위과정 신설
3. 정책 연구 및 자문: 북극 및 북극항로 관련 정책 연구 및 정부 기관(외교부, 해양수산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)에 정책 제안, 북극 관련 기업 및 기관 대상 컨설팅 제공.
4. 국제회의 유치 및 주관: 북극 연구 및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및 포럼 기획·운영 * 주요 국제 행사: 북극협력주간(해수부), 영일만포럼/포항북극항만포럼(포항/경상북도), 활동해국제심포지움(포항/경상북도), 한중러 북극워크샵(경희대 극지연구센터)
5. 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재지)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)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장
2. 부센터장
3. 4개의 연구팀: 연구교육팀, 북극해운물류연구팀, 정부R&D사업/컨설팅팀, 국제회의(유치)팀
4. 운영위원회
5. 자문위원회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
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부센터장) ①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.

② 부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③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부 또는 연구팀) 센터는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은 연구팀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교육팀은 전문 특화된 연구소의 극지연구 활성화 및 극지 강좌 신설, 극지대학원 신설, 최고위과정 신설 사업을 수행

한다.

2. 북극해운물류연구팀은 북극항로와 해운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한다.
3. 정부R&D사업/컨설팅팀은 정부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및 기타 기업과 기관의 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.
4. 국제회의(유치)팀은 북극 관련 국제회의 유치(주관)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2. 조직
 3. 제 규정의 개폐
 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5. 센터장 추천
 6. 연구원, 연구조원, 행정요원 등 임명
 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센터장과 각 연구팀장 중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회)

① 본 센터의 목적 달성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-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제11조(구성원)

① 본 센터에는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상임 연구원, 전문 연구원, (국내, 해외) 객원 연구원, 일반 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센터 소속임을 명기한다.
- ③ 센터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「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
제3장 재정 및 기타

제12조(재정)

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
3. 정부 R&D사업 및 (기업,기관) 컨설팅 수익금
4. 국제회의 유치 및 주관 수익금
5. 보조금 및 기부금
6. 기타 수입

제13조(회계)

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·운영하며, 교비 또는 대외과제·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-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- 제14조(보칙) ① 본교 □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□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②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③ 본 센터가 통폐합 또는 폐쇄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반납해야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